

소송허가결정 고지서

아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1273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 아래 2항의 총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이 되므로, 다음 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제외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표시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7061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 1. 김순덕

(대표당사자)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 유봉한

서울 서초구 효령로46길

3. 이해욱

서울 강서구 방화3동

4. 이연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5. 강효숙

6. 이연택

대표당사자 5, 6의 주소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김주영, 송성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피 고 : 도이치뱅크 아게(Deutsche Bank AG)

독일연방공화국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타우누산라게 12

대표이사 요세프 아커만(Josef Ackermann)
대한민국에서의 공동대표자 박현남, 김종갑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서린동, 영풍빌딩 18-19)
소송대리인 정진영, 이윤식, 이상운, 박성하, 박철희, 박상용,
배태준

2. 총원의 범위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2007. 8. 31.경 발행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원금비보장형)” 을 매수하였다가 만기까지 보유한
사람들

3. 청구의 취지

피고는 각자 총원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추후 총원의 구체적인 손해액
이 확정되면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임)

4. 청구원인의 요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2007. 8. 31.경 발행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원금비보장형)’ 가 만기에 128.6%의 상환조건을 충
족시킬 것이 예상되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와 백투백 헤지거래를 한
피고 도이치뱅크 아게는 만기상환금의 지급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기일
장 마감 전 10분간의 동시호가시간에 기초자산인 KB금융 보통주를 대량
매도하여 종가를 하락시킴으로써 만기상환금 지급이 무산되게 하여 투자
자들(총원)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것으로 179조에 의하여 총원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제외신고

가. 제외신고

- (1) 제외신고는 구성원이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 (2)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접 위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 소송의 판결 및 소송상 화해 등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즉, 위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분배절차에 따라 일정액의 배상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 위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나. 제외신고의 기간 및 방법

제외신고를 하고자 하는 구성원은 2016. 7. 26.까지 제외신고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앞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외신고서 양식은 첨부된 문서와 같으며, 인터넷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uwon.scourt.go.kr)의 「양식」란의 ‘민사재판’ 항목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구성원의 권한

- (1)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착수금은 0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판결, 화해, 조정성립 등으로 인정되

는 손해배상금 등 중 1심에서 성공 시 12%(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동일), 2심에서 성공 시 15%, 3심에서 성공시 18%로 약정되었으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1) 이 고지 후 주소가 변경된 구성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고지는 종전 주소로 하게 됩니다.
- (2) 위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구성원에게 개별 고지를 하지 않는 사항은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위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 6.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7 민사부 재판장 판사 김 경

제외신고서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7061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1. 김순덕
(대표당사자) 2. 유봉한
3. 이해욱
4. 이연진
5. 강효숙
6. 이연택
피 고 도이치뱅크 아게(Deutsche Bank AG)
대표이사 요세프 아커만(Josef Ackermann)
대한민국에서의 공동대표자 박현남, 김종갑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 (-)은
(는)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

2016. . .
구성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7 민사부 귀중

◇유의사항◇

1. 구성원이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구성원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